



Alameda-Contra Costa 대중교통 지구

## 스탭 보고서

수신: 계획위원회  
 AC Transit 이사회  
 발신: David J. Armijo, 제너럴 매니저  
 제목: 공청회 실시 - 제VI편 정책

## 조치 항목

### 추천 조치 사항(들):

제VI편(민권법) 준수와 관련된 연방대중교통관리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책 제163, 501, 551호에 대해 제안된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2014년 6월 11일에 실시할 것을 고려합니다.

### 요약:

제VI편(민권법)과 FT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3건의 이사회 정책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에는 이 지구의 제VI편 불만과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의 업데이트, 불평등한 영향과 불균형한 부담 정책의 실시, 그리고 제VI편 대중교통 점검 프로그램의 실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 지구의 제VI편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서, 2014년 10월 1일까지 업데이트하여 FT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재정에 대한 영향

FTA 규정과 지구 정책이 요구하는 대중 지원 노력을 위해 \$40,000 소요.

### 배경/근거:

1964년 민권법 제VI편은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 대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의도적이든 아니든)을 금지합니다. 1994년에 공포된 행정 명령 제12898호는 환경 정의를 모든 연방 기관과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의 사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 제VI편을 더 강화합니다. 또한 2000년에 공포된 행정 명령 제13166호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제VI편을 더욱 강화합니다. FTA는 2012년 10월에 FTA 자금 수령 기관의 제VI편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요약한 회람 제4703.1호를 발표했습니다.

AC Transit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제VI편 프로그램을 3년마다 연방대중교통관리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중인 개정은 2014년

10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의 FTA 지침을 계속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사회 정책들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

이사회 정책 제501호에는 현재 이 지구의 고객 접촉 정책과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한 규정을 이사회 정책 제501호에서 제551호로 이동시켜 모든 제VI편 과정과 정책을 한 문서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제안된 불만 처리 과정에는 2가지의 새로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환경 정의에 대한 우려를 이 과정에 통합하는 한 방법으로서, 개인이 제VI편 불만 신청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저소득층을 포함, 그리고
2.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제공하려는 의도

제안된 이사회 정책 제551호 초안에는 새로운 연방 지침에 따른 청구인과 지구 모두에 대한 기한과 일정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불만은 신청인이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스태프는 불만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 수령 후 10일 이내에 재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너럴 매니저는 10일 이내에 재고 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또한 신청인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FTA에 직접 불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불만 처리 절차를 FTA 지침에 맞추기 위해 2012년에 변경한 현재의 지구 관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승인되면 이 관행은 지구의 정책으로 성문화됩니다.

###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

이 지구의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현재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다른 이사회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 제163호와 제VI편 서비스 및 요금 형평성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정책 제551호. 이 2건의 정책을 개정하면 제안된 서비스와 요금 변경이 제VI편 형평성 분석을 요구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의합니다.

이사회 정책 제551호에 대한 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제VI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예를 제거

- 특정한 변경을 3년의 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검토했을 때 주요 서비스 변경의 정의를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주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포함
- "경미"한 서비스 변경의 지정을 삭제
- 지구 도시 계획 구역의 정의를 제정
-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변경은 또한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

이사회 정책 제551호에 계속 유지될 제안된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VI편 분석은 서비스 조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실시됩니다. 이 정책에 규정된 서비스 변경은 이사회 정책 제163호("이사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과정")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주요 조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변경은 보통 노선 운행 마일 또는 시간의 중대하고 총체적인 변경을 말하며, 시스템 전체의 노선 재조정, 운행 빈도의 변경 또는 서비스의 추가 및 중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수를 산정합니다."

이사회 정책 제163호에 대한 개정에는 어떤 제안이 "주요" 서비스 변경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고, 어떤 변경에 공청회 과정과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이 모두 적용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정책의 초안에 의하면, 다음의 모든 제안된 서비스 변경에 공청회 과정과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이 적용될 것입니다.

- 신규 대중교통 노선
- 이전에 어떤 노선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가로(주요 간선 가로는 제외)에 대한 신규 서비스
- 시스템 전체의 대중교통 수익 마일 또는 시간에 대한 10%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 이 지구의 4개 도시 계획 구역(서부 Contra Costa 카운티, 북부 Alameda 카운티, 중부 Alameda 카운티, 남부 Alameda 카운티) 중 하나에 대한 대중교통 수익 마일 또는 시간에 대한 20%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 개별 노선의 대중교통 수익 마일 또는 시간에 대한 25%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새 정책의 초안에서 다음의 예외는 주요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선들의 통합으로 새 노선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노선 번호의 재조정
- 기준 시점 변동 (이전 시점 동안의 운행과 비교)
- 재난으로 인해 필요한 긴급 서비스 변경 또는 공공 가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변경(이사회 정책 제163호는, 필요한 경우, 차후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을 규정)
- 12개월 미만 동안 시행될/시행된 단기 또는 임시 서비스의 도입 및 중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날에 총 운행 횟수가 10회 미만인 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 50% 변경

- 다른 방식 또는 운영자에 의해 교체되는 지구 운영 서비스를 중지하고, 동일하거나 더 개선된 운행 간격, 요금, 환승 옵션, 서비스 시간 및 정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

정책 163호에 포함된 한 가지 예외(예산 긴축으로 인해 중지된 서비스의 복구)는 제VI편의 목적상 허용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안된 변경이 다른 주요 서비스 변경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스탭들은 서비스의 복구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계속 실시합니다. 운행 간격은 서비스 형평성 분석에서 검토할 수 있고, 또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스탭들은 주요 서비스 변경과 함께 실시되는 운행 간격 조정에 대한 기존의 예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불평등 영향 정책

AC Transit은 현재 불평등 영향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정책 제551호에 통합될 스탭이 제안하는 불평등 영향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 전체가 비-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이 부담하는 것보다 15% 이상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 이러한 변경은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FTA의 규정에 의하면, 불평등 영향은 소수민족 주민이 부담하는 영향을 비-소수민족 주민이 부담하는 영향과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이 지구의 제VI편 서비스 및 요금 형평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또는 요금을 제안된 변경과 비교하고, 금액의 변경과 퍼센트 변경을 계산합니다. 이 지구는 서비스 형평성 분석에서 운행 빈도, 서비스 시간, 차량 하중 및/또는 버스 노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AC Transit의 현행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측정하나, 제안된 서비스 변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비-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보다 15% 이상 더 많고, 이러한 변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새로운 정책에서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불균형 부담 정책

AC Transit은 현재 불균형 부담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정책 제551호에 통합될 스탭이 제안하는 불균형 부담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또는 승객 전체가 비-저소득 주민 또는 승객이 부담하는 것보다 15% 이상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이러한 변경은 불균형한 부담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AC Transit은 이 정책에서 기존의 서비스 또는 요금을 제안된 변경과 비교하는 형평성 분석을 실시하여 금액의 변경과 퍼센트 변경을 계산합니다. 어떤 제안에 불균형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지구는 대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정도로 부담을 완화합니다.

## 대중교통 서비스 점검

FTA 회람은 대중교통 제공자에게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 기준 및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AC Transit 스태프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책 제550호, "서비스 기준 및 설계 정책"에 포함된 정의, FTA 회람에 요약된 방법, 최소한 3년마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따라 각 노선의 성과를 평가하여 서비스의 모든 요소들이 형평성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한 노선에 대한 서비스가 기준 또는 정책을 초과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 지구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스태프들이 이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하여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소득에 근거하여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지구는 그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노력을 제VI편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3년마다 작성하는 제VI편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대중 아웃리치

AC Transit은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 불평등 영향 정책, 불균형 부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중 참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태프들은 공청회를 실시하기 전에 제VI편 및 환경 정의 행정 명령의 보호를 받는 주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의 개발과 검토에 참여할 충분하고 의미있는 기회를 갖도록 광범위한 대중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계획된 아웃리치 활동에는 지구 전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포럼,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의 회의, 버스 광고, 정보 패킷, 그리고 전통적인 경로와 소셜 미디어 경로를 통한 광고가 포함됩니다. 공청회와 관련된 정보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한 FTA 지침의 요구에 따라,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획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장점/단점:

이 지구는 주요 서비스 변경을 실시하기 전에, 그리고 업데이트된 제VI편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전에 FTA의 요건과 일치하는 정책을 보유해야 합니다. 정책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장점은 이 지구가 대중의 검토를 통해서 제VI편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단점은 없습니다.

## 대안 분석:

정책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그러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나, 이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AC Transit이 연방 규정을 준수할 수 없고, 지구 프로그램과 활동에 사용할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이 대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번호: 13-305b

6/26페이지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사회 조치/정책:**

스텝 보고서 13-305a - 제VI편 정책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BP 550 - 서비스 기준 및 설계 정책

BP 163 - 이사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과정

BP 551 - 제VI편 서비스 검토 및 준수 보고서 정책

BP 501 - Alameda-Contra Costa 대중교통 지구에 적용되는 고객 접촉 정책 및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

보고서 번호: 13-305b

7/26페이지

첨부:

- 1: 개정 이사회 정책 제501호 초안
- 2: 개정 이사회 정책 제551호 초안
- 3: 개정 이사회 정책 제163호 초안
- 4: 공청회 공지문 초안

부서장 승인:

검토자:

작성자:

Dennis W. Butler, 최고 계획 및 개발 책임자  
Robert Del Rosario, 서비스 개발 담당 디렉터  
Denise Standridge, 임시 법률 고문  
Sally Goodman, 제VI편 코디네이터

## AC Transit

정책 번호: 501

# 이사회 정책

카테고리: 이사회 및 일반 행정 사항

---

### ALAMEDA-CONTRA COSTA 대중교통 지구에 적용되는 고객 접촉 정책 및 제VI편 준수 과정

#### 목적

불만, 서비스 문제에 대한 신고, 정보 요청 또는 제안을 포함하는 고객 접촉과 관련된 이 지구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 A.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시 및 신속 대응 과정을 수립 및 유지한다.
- B. 모든 고객 접촉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을 수립 및 유지한다(이사회 정책 제551호에 요약된 제VI편/환경 정의 고려사항과 관련된 과정 포함).
- C. 고객 접촉을 처리하는 모든 사업부/부서는 정보를 적시에 협조적으로 상호 공유함으로써 긴밀하게 협력한다.
- D. 고객들은 이 지구에 대한 접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 E. 이 지구의 불만/신청 처리 과정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F. 서비스 및 직원들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접촉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이 지구에 모든 고객 접촉에 대한 전체적이고 완전한 기록을 제공한다.



## AC Transit

정책 번호: 551

# 이사회 정책

카테고리: 서비스 개발

---

## 제VI편 서비스 검토 및 준수 보고서 정책

### I. 목적

연방대중교통관리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은 자금 수령 기관이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1964년 민권법 제VI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49편(개정 미국연방법전 제53조)에 의하면, AC Transit은 FTA(제5307 및 5309조)에 의해 자금 수령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행정 명령 제12898호 및 FTA 환경 정의 회람 제4703.1호에 의해 규정된 추가 연방 지침에는 대 East Bay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뢰성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구의 사명에 환경 정의를 통합시킬 책임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행정 명령 제13166호에 의해 규정된 추가 연방 지침에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민권법의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연방 자금 수령 기관으로 지정된 AC Transit 지구는 이 지구, 하위 수령 기관 및 계약자들이 1964년 민권법과 행정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FTA 회람 제4702.1B호(2012년 10월 1일자)에 따라 3년마다 제VI편 업데이트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지구는 소수민족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 또는 서비스를 변경할 때마다 제VI편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 특히, AC Transit은 운행시간이나 요일, 운행 간격 또는 요금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변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러한 변경이 소수민족 또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러한 서비스 검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FTA의 제VI편 회람은 AC Transit이 고정 노선 방식에 대한 4건의 서비스 기준과 2건의 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FTA는 이러한 정책과 기준을 불평등한 영향과 불균형한 부담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 점검의 결과는 이사회가 검토, 인식 및 승인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FTA 회람에는 대중에게 제VI편 불만을 신청할 권리를 통지하는 방법과 이 지구가 이러한 불만에 응답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 II. 3년마다 제VI편 업데이트 작성

이 지구는 FTA의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제VI편 업데이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3년마다 작성하는 업데이트에서는 FTA 회람(2012년 10월 1일자)에 명시된 대로, 이 지구, 하위 수령 기관 및 계약자들이 다수의 사안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III. 제VI편 서비스 및 요금 형평성 분석

AC Transit은 모든 요금 변경 제안에 대해 인상 또는 인하 금액에 상관없이 요금 형평성 분석을 실시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 시당국이나 대중교통기관이 모든 승객들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한다고 선언한 "대기 보호의 날" 또는 다른 경우
- 다른 조치들에 대한 측정치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 인하, 또는
-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 관측 또는 임시 요금 인하

이 지구는 아래에 정의된 주요 서비스를 변경할 때마다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이 지구는 주요 서비스 변경 한계점을 3년의 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는 변경에 대해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요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수를 평가한다.

모든 서비스 및 요금 형평성 분석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3년마다 작성되는 제VI편 업데이트 보고서에 포함된다.

#### A.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

제VI편 분석은 서비스 조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실시된다. 이 정책이 다루는 서비스 변경은 이사회 정책 163호("이사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과정")에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주요 조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주요 서비스 변경은 보통 노선 운행 마일 또는 시간의 중대하고 총체적인 변경을 말하며, 시스템 전체의 노선 재조정, 운행 빈도의 변경 또는 서비스의 추가 및 중지가 포함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수를 평가한다.

정책 163호에 포함된 한 가지 예외(예산 긴축으로 인해 중지된 서비스의 복구)는 제VI편 목적상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제안된 변경이 다른 주요 서비스 변경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스태프들은 서비스의 복구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계속 실시한다.

#### B. 불평등 영향 정책

FTA 회람에 표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불평등 영향이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의해 식별되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표면상으로 중립적인 정책 또는 관행을 말하며, 자금 수령 기관의 정책 또는 관행에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불균형한 영향을 줄이는 하나 이상의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 이 정책은 요금/서비스 변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소수민족 주민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정한다.*

불평등 영향에 대한 측정치에는 소수민족 주민이 부담하는 영향을 비-소수민족 주민이 부담하는 영향과 비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지구는 주요 서비스 형평성 분석을 할 때, 운행 빈도, 서비스 시간 및/또는 버스 노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AC Transit의 현행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측정한다. 제VI편 형평성 분석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또는 요금을 제안된 변경 사항과 비교하고, 금액의 변경과 퍼센트 변경을 계산한다. 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 전체가 비-소수민족 주민 또는 승객이 부담하는 것보다 15% (이상)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이러한 변경은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다.

### C. 불균형 부담 정책

FTA 회람에 표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불균형 부담이란 저소득 주민이 비-저소득 주민보다 불균형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표면상으로 중립적인 정책 또는 관행을 말한다. 불균형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 수령 기관은 대안을 제시 및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저소득 주민은 제VI편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계층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환경 정의 원칙의 중복을 인정하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및 요금 변경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FTA는 제안된 서비스 및 요금 변경이 저소득 주민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중교통 제공 기관에 이러한 변경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AC Transit은 기존의 서비스 또는 요금을 제안된 변경 사항과 비교하는 제VI편 형평성 분석을 실시하여 금액의 변경과 퍼센트 변경을 계산한다. 이러한 변경 제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 주민 또는 승객 전체의 비율이 비-저소득 주민 또는

승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비율보다 15% (이상) 더 많을 때, 이러한 변경은 불균형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

#### D. 영향의 완화

이 지구가 서비스 또는 요금 변경에 대한 제안이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러한 제안과 동일한 정당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불평등한 영향이 적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별이 적은 대안이 없고, AC Transit이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AC Transit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지구가 서비스 또는 요금 변경에 대한 제안이 저소득 커뮤니티에 결과적으로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저소득 승객에게 제공할 대안을 강구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이러한 영향을 피하고,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V. 대중교통 서비스 점검

AC Transit은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 기준 및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시스템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AC Transit 스태프들은 FTA 회람에 설명된 정의와 방법에 따라 각 노선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어도 3년마다 이사회에 서비스 카테고리별 노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고, 3년마다 작성되는 제VI편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특정한 노선에 대해 관찰한 서비스가 기준 또는 정책을 초과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 지구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태프들이 이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하여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소득에 근거하여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지구는 그러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노력을 제VI편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보고해야 한다.

#### V.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

이 지구는 제VI편 위반에 대한 불만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발견된 문제를 확인,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환경 정의를 이 지구의 사명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합하기 위한 목표의 일부로, 저소득 주민들은 제VI편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 지구는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소득 지위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할 의사가 있다.

### A.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AC Transit의 의도는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제VI편 불만 검토 과정을 통해서 청구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 B. 제VI편 불만 공지문의 게시

다음의 공지문은 버스 내, 공공매표소, 공공회의실(AC Transit 이사회실 등),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제작된 AC Transit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AC Transit은 어떤 사람도 1964년 민권법 제VI편("제VI편")에 의해 보호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서비스 혜택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 또는 거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VI편에 규정된 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불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신청하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서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AC Transit, Title VI Coordinator,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 94612. (510) 891-5470.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www.actransit.org/customer/contact-us/](http://www.actransit.org/customer/contact-us/)로 가십시오.

### C. 불만의 접수

제VI편 불만을 접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우편—현재 버스 내와 AC Transit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제VI편 불만 신청에 대한 설명문에는 제VI편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불만 신청 양식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제공된다.

- 이메일 또는 전화—개인들은 AC Transit 고객 피드백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VI편 불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불만은 제VI편 검토를 위해 제VI편 불만 검토 부서로 전송된다. 또한 개인들은 전화로 불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 D. 불만 검토

불만은 청구인이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불만이 접수되면, 제VI편 코디네이터는 그 불만을 검토하여 제VI편 우려(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저소득 지위에 근거하여 서비스 혜택에 대한 참여로부터 배제 또는 거부되는 것과 관련된 우려)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한다. 모든 제VI편 파일은 최소한 10년 간 보관된다.

이러한 청구는 제VI편과는 관련이 없으나, 다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제VI편 코디네이터는 불만의 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로 전송하고, 청구인에게 불만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고, 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도록 법무 부서로 보낸다. 불만 신청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부서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청구인에게 응답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신청이 제VI편 문제점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제VI편 조사가 착수된다. 제VI편 코디네이터는 개인에게 서신을 보내어 AC Transit은 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 부서로 보낸다.

#### E. 제VI편 청구에 대한 조사

스텝들은 불만을 검토하고, 연방대중교통관리국의 지침을 사용하여 제VI편 문제점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한다. 스텝들은 AC Transit이 불만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할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제VI편 코디네이터는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추정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VI편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경우, 스탭들은 제너럴 매니저 및/또는 이사회를 위해 즉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C Transit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낸다. 위반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제안 또는 착수 중인 개선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또한, 스탭들은 제VI편 및 환경 정의(해당되는 경우)와 관련된 AC Transit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거나, 또는 제VI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VI편 코디네이터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서신을 청구인에게 보낸다.

#### **F. 재고 요청**

청구인이 이러한 응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 수령 후 10일 이내에 제너럴 매니저에게 재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재고 신청서는 주장을 검토하는 제VI편 코디네이터 및/또는 다른 스탭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너럴 매니저는 10일 이내에 재고 신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너럴 매니저가 재고에 동의하는 경우, 이 문제는 제VI편 코디네이터가 재고하도록 반송된다.

#### **G. 연방대중교통관리국에 대한 불만 제출**

또한 청구인은 주장된 차별이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at FTA Office of Civil Rights, Attention: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으로 직접 불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 AC Transit

정책 번호: 163

### 이사회 정책

카테고리:

---

#### 이사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과정

##### I. 목적

공청회 과정은 이사회와 지구가 AC Transit 지구의 주민과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 및 수렴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사회가 이 정책을 채택하는 의도는 대중이 제공하는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의 조항들은 이사회 정책 제100호, 절차 규정의 제6.8조에 명시된 절차에 추가된다.

##### II. 공청회

공청회 일정은 아래에 기재된 사안들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사회는 아래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공청회 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

###### 1. 요금

요금에는 현금 요금, 승차권 요금, 패스 요금, 환승 요금 등이 포함되며, 이 지구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사용료와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요금의 종류에 대한 적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인하 또는 관측 요금에 대한 조정은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다. "관측 요금"에는 서비스를 관측하고 승객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실시하는 요금 구조의 변경이 포함된다.

## 2. 대중교통 서비스의 주요 조정

대중교통 서비스의 주요 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신규 대중교통 노선, 또는
- (b) 이전에 어떤 노선에도 사용하지 않은 가로(주요 간선 가로와 트럭 노선으로 지정된 가로는 제외)에 대한 신규 서비스, 또는
- (c) 시스템 전체의 대중교통 수익 마일 수 또는 시간 수에 대한 10퍼센트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또는
- (d) 이 지구의 4개 도시 계획 구역(서부 Contra Costa 카운티, 북부 Alameda 카운티, 중부 Alameda 카운티, 남부 Alameda 카운티) 중 하나에 대한 대중교통 수익 마일 수 또는 시간 수에 대한 20퍼센트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또는
- (e) 변경이 제안된 요일에 대해 매일 계산되는 어떤 노선의 대중교통 수익 마일 수 또는 시간 수에 대한 25퍼센트 이상의 총체적인 변경.
- (f) 예외: 대중교통 서비스의 주요 조정에 대한 예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기존 노선들의 통합으로 새 노선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노선 번호의 재조정
  - 기준 시준 변동(이전 시준 동안의 운행과 비교한 변동이 위에 기재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주요 조정에 대한 정의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긴급 서비스 변경(공중보건 또는 공공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해 필요할 수도 있는 노선 또는 서비스 빈도에 대한 변경, 공공 가로에 대한 접근 변경, 또는 공공 가로를 이동하는 지구 차량의 능력 포함 긴급 서비스 변경은 제너럴 매니저가 변경 조치 중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고 즉시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180일을 초과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차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예산 긴축으로 인해 지난 10년 이내에 중지되었던 서비스의 복구(해당 서비스가 이전에 중지되었던 것과 동일한 노선에서 제공되고, 위에 기재된 대중교통 서비스 요건에 대한 주요 조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변동이 적용되는 경우)
- 12개월 미만 동안 시행될/시행된 단기 또는 임시 서비스의 도입 및 중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날에 총 운행 횟수가 10회 미만인 노선에 대한 서비스 변경
- 다른 방식 또는 운영자에 의해 교체되어, 특정한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더 개선된 운행 간격, 요금, 환승 옵션, 서비스 시간 및 정차를 제공하는 지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중지

### 3. 환경 영향 검토

California 환경개선법, 주정부 시행 지침 또는 이사회 정책 제512호가 요구하는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심각한 영향 부재 확인서(negative declaration).

### 4. 기타 공청회

기타 공청회는 연방 또는 주의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공청회에는 FTA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는 공청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 지구 보조금이 지역 보조금 신청 과정의 일부인 경우, 이 보조금 신청을 위해 지구 공청회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대도시 위원회, 다른 지역 기관 또는 운영자가 지역 보조금 공청회를 조정 및 실시한다.

## III. 공청회 개최 및 공지

## 1. 공청회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앞으로 실시될 공청회를 충분히 공지하기 위해, 제안된 공청회 날짜로부터 최소한 28일 전에(법률이 더 많은 공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공청회를 실시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법률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28일의 사전 공지 요건을 경미하게 변경하더라도 아래에 요약된 공지 절차의 실행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2. 공지문의 법적 게재

이사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청회의 주제 및 공청회가 열리는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포함된 공청회 공지문을 작성해야 한다.

공지문은 이 지구 내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신문에 주 1회, 그리고 2주 동안 연속해서 게재해야 한다. 이 항목의 세부항목 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차 공지문을 공청회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2차 공지문은 공청회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1차 공지문을 게재한 후 5일 이내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 3. 환경 문제에 대한 특별 조항

공청회가 심각한 영향 부재 확인서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공지 또는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시 기간을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고문은 연방이나 주의 법규, 또는 이사회 정책 제512호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대중 의견 제시 및 공지 기간의 연장을 검토 및 결정해야 한다.

## 4. 기타 공지문

공청회 공지문은 공청회의 주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을 감독하는 시의회, 감독위원회, 학군, 또는 제너럴 매니저가 결정하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상기 법적 공지문에 추가하여, 제너럴 매니저 또는 이사회는 제안된 공청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지문을 추가로 배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공청회의 주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집단 또는 인근 지역에 적합한 신문에 게재
- (b) 공청회의 주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다이렉트 메일 공지문 발송
- (c)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영향을 받는 노선의 버스 및/또는 버스 정거장 기둥에 정보가 포함된 표지 및/또는 전단 부착
- (d)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신문에 보도자료 배포 및/또는
- (e)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신문(들)에 의장광고 게재

#### IV. 공청회의 실시

##### 1.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이사회 정기, 또는 휴회-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실시된다. 공청회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a) 공청회 목적 발표
- (b) 이사회 의장에 재량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디렉터와 다른 간부들 및 지구 스태프 소개

- (c) 이사회 의장, 제너럴 매니저, 또는 제너럴 매니저가 지정한 사람이 공청회에서 검토할 주제를 소개
- (d) 대중 의견의 접수. (대중 의견은 보통 발표자 양식을 각 발표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후에 제공되므로, 각 개인은 질서 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발표자에게 할당되는 시간은 이사회 이사회 정책 제100호, 절차 규정에 명시된 시간 제한에 준한다.)
- (e) 구두 및/또는 서면 의견을 경청 및 접수한 후에 공청회가 종료된다. 공청회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다음 번에 결정을 고려할 날짜와 시간을 발표한다. 공청회가 종료된 후 얼마나 빨리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연방이나 주의 법규 또는 이사회 정책이 특정한 기간 내에 결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사회 재량에 따른다.
- (f) 공청회를 시작 또는 종료하기 전에, 이사회는 발의에 의해 어떤 공청회를 특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할 수 있다. 이 항목을 계속하기로 한 이사회 조치 후에 실행 가능한 만큼 빨리,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계속 공지문(notice of continuance)을 지구 종합 사무실 건물 내에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2. 이사회 구성원의 공청회 불참

이사회 구성원(들) 또는 이사회 정족수가 공청회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는 진행할 수 있고, 지구 총무의 공청회 요약 사본(공청회 항목을 검토할 때 회의 시간에 맞추어 회의록을 작성 및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승인된 회의록, 또는 상기 공청회에 대한 녹음을 공청회에서 채택된 결정 사항(들)에 대해 표결하기 전에 불참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불참한 각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이 결정(들)에 참여하기 전에 지구 총무의 공청회 요약, 승인된 회의록을 검토했고, 또는 녹음 테이프를 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 3. 서면 의견:

구두 의견에 추가하여, 공청회가 종료되기 전에 서면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 모든 서면 의견의 사본은 해당 주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이사회 구성원(공청회에 불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 포함)이 읽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4. 공청회 녹음

이사회 정책 제100호, 절차 규정의 제6.15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은 공청회에 대한 기록으로 인정된다. 상기 공청회에 대한 녹음은 상기 이사회 정책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지구 총무, 제너럴 매니저 또는 법률 고문의 요청에 따라 법원 속기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공청회 공지

### Alameda-Contra Costa 대중교통 지구

*제VI편(민권법) 및 환경 정의 명령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사회 정책 개정을 고려*

*AC Transit 이사회는 아래의 "프로젝트 설명" 항목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이사회 정책 제163호(이사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과정), 제501호(Alameda-Contra Costa 대중교통 지구에 적용되는 고객 접촉 정책 및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 제551호(제VI편 서비스 검토 및 준수 정책)에 대해 제안된 개정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AC Transit 종합 사무실 건물(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2층 이사회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제안된 개정은 AC Transit의 웹사이트 [www.actransit.org](http://www.actransit.org)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 지구의 종합 사무실 건물(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과 다양한 다른 장소(이 지구의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한 주요 카운티 및 시 사무소와 주요 도서관 포함)에서 인쇄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문서들을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510) 891-7175로 전화해 주십시오.

#### 프로젝트 설명:

1964년 민권법 제VI편은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들에 대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참여의 배제 또는 혜택의 거부와 관련된 차별(의도적이든 아니든)을 금지합니다. 1994년에 공포된 행정 명령 제12898호는 환경 정의를 모든 연방 기관과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의 사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64년 민권법 제VI편을 강화하고, 2000년에 공포된 행정 명령 제13166호는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VI편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사회 정책 제163, 501, 551호는 이러한 규정들에 명시된 민권 및 환경 정의에 대한 명령을 시행 및 준수하기 위해 AC Transit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제안된 개정은 민권 및 환경 정의와 관련된 연방대중교통관리국(FTA)의 현행 요건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BP501 - 고객 접촉 정책: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과 관련된 규정을 BP 551로 이동

BP163 - 공청회 과정: 어떤 제안된 서비스의 변경에 대해 공청회 과정과 제VI편 서비스 형평성 분석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BP 551 - 제VI편 서비스 검토 및 준수 보고서 정책 1) 새로운 불만 처리 절차와 일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제VI편 불만 처리 과정 및 업데이트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 2) 주요 서비스 변경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 3) 제안된 변경이 제VI편의 보호를 받는 주민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정의 한계점을 설정, 그리고 4) 대중교통 서비스 점검 및 보고 프로그램을 설치.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정책 제163, 501, 551호에 대한 개정은 2014년 7월에 시행됩니다.

### 대중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사회 정책 제163, 501, 551호에 대해 제안된 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환영하며, 이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또는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AC Transit 종합 사무실 건물(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2층 이사회실에서 실시하기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제공 또는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의 서면 의견은 서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2014년 6월 11일 수요일에 공청회가 종료되기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서면 의견은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의견과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서면 의견을 우편 주소 AC Transit Board of Directors,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12, 팩스 (510) 891-7157, 또는 이메일 [planning@actransit.org](mailto:planning@actransit.org)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보이스메일 (510) 891-5470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 장소에는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수화 통역사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 통역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를 요청하시려면 2014년 6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지구 총무 사무실 전화번호 (510) 891-7201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이 TDD를 사용하려면 711로 California 중계 서비스에 전화하여 (510) 891-4700으로 연결하십시오.

### **공청회 장소로 운행하는 대중교통편**

Oakland 중심가를 운행하는 모든 AC Transit 버스 노선은 공청회 장소로부터 도보 거리 내에 정차합니다. 공청회 참석 계획을 세우시려면, [www.actransit.org](http://www.actransit.org)를 방문하거나 511로 전화하십시오(그리고 “AC Transit”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BART를 이용하여 19<sup>th</sup> St. Oakland 역에서 하차하여 공청회 장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할 때는 향수 제품의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